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2. 7.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변영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1. 제안경과

- 2012년 7월 23일 김장식의원(대표발의)외 3인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됨.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 제도를 두고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입법·법률사안 발생 시 효율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3인이내의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 위촉(안 제2조)

나. 자문사항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입법정책, 입법사안의 자문을 하는 입법고문과, 법규해석,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기타 법률사항을 자문하는 고문변호사 자문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임기(위촉기간)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안 제4조)

라. 불성실 자문, 품위손상,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의 해촉규정 명시(안 제5조)

- 마.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회의에 참석 별도의 자문에 응할 경우 출석수당 지급규정(안 제6조)
- 바.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건실적부 비치 월별 정리규정(안 제7조)

4. 검토의견

- 검토결과 조례제정 취지와 절차,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 원안의 일부내용중 아래와 같이 맞춤법 표기 방법 및 오·탈자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정의견>

- 안 제2조제1항중 제1호·제2호의 문장 끝부분 마침표 삭제
- 안 제4조(위촉기간)의 “연임할수 있다”를 ⇒ ”연임 할 수 있다.”로 띄어쓰기
- 안 제6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단서규정인 ”다만,“을 ⇒ ”또 한,“으로 수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2. 7.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회 변영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2012년 7월 23일 박영송의원(대표발의)외 3인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됨.

2. 제안이유

- 일부 명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해당 재산관리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도록 하고,
- 위원장, 간사(부위원장) 모두 사고시 임시위원장으로 선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안 제9조,안 제10조,안 제11조)
- 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부서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안 제3조제3항)

4. 검토의견

- 검토결과 조례 개정 취지와 절차, 상위법령 저촉 등 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 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7인”을 각각 “7명”으로 하고, 제4호중 “5명”을 “5인”으로 한다는 2008년도 법제처기준 순화용어 정비대상중 “명”으로의 표기가 바른표기임에 따라 개정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2. 7.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회
변영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2012년 7월 23일 진영은의원(대표발의)외 3인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됨.

2. 제안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새기도록 함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가. 공인의 인영을 한글·전서체 가로로 새기도록 한 규정을 한글로하여 가로로 새기도록 개정(안 제3조제2항)
- 나. 별지 공인사고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잘못 표기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임(안 별지 제5호서식)”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검토결과 조례개정 취지와 절차,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 개정지시문중 일부를 바른표기 방법으로 검토결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원안>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검토의견>

별지 공인사고 보고서의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2. 7. 30.

서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회 변영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2012년 7월 23일 김부유의원(대표발의)외 3인 의원으로 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됨.

2. 제안이유

- 동일조문내 중복하여 불합리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 및 탈자에 대하여 수정보완 코자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가.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1~3호)와 같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필요한 규정으로 “이 경우 제3호는 처리할 수 있다.”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임(안 제5조제1항)
- 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세종특별자치교육감”으로 잘못표기된 탈자를 바로 잡고,
- 다.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으로 행정 사무의 처리상황 보고와 질문응답에 관한 규정임에 불구하고, 관계되지 않은 “시정연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괄호내서된 규정을 삭제(안 제5조 제2항제1호)

4. 검토의견

- 검토결과 조례개정 취지와 절차,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 개정 지시문의 일부중 바른 표기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원안>

제5조제1항중 후단 “이 경우 제3호는 처리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세종특별자치교육감으로부터”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예산안 제안에 따른 다음연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말한다)”을 삭제한다.

<검토안>

제5조제1항중 후단 “이 경우 제3호는 처리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제1호중 “세종특별자치교육감으로부터”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로 하고, “(예산안 제안에 따른 다음연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말한다)”를 삭제한다.